

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

신고번호

건축주

대지위치

전체 개요	건축면적 ㎡			연면적 합계 ㎡		
동별 개요	동별	구조	용도	건축면적(㎡)	연면적(㎡)	지상층수

존치기간

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	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 · 제15조의2	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